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98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12월 17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최기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27호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과 김용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50호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을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 (2021. 12. 17.)에서 심사한 결과,

동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· 보완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대안)」 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하나의 조례에 대해 유사한 내용이 담긴 2개의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학교민주시민 교육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민주화운동의 역사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자 함(안 제5조제7호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민주화운동의 역사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)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6. (생략) <신설></p>	<p>제5조(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) -----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민주화운동의 역사</u></p>